
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130호

공 고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2일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처분당사자

연번	인가번호	인가일	조합명	소재지
1	제41호	2011.5.17.	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	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

2. 처분의 내용 :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
3. 처분 일자 : 2026. 1. 12.
4. 공고 기간 : 2026. 1. 12. ~ 2026. 2. 11.
5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1년 이상 미영업
6. 근거 법규 :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2조(설립인가의 취소) 제1항 제4호
7. 기타 사항 :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